

## 본회 이사회, 통합경영분과위 연석회의 개최 지난 20일 본회 회의실서



본회는 지난 20일 2002년도 제 3차이사회 및 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3년도 본회 닭고기 자조금 사업과 관련 (사)한국계육협회 닭고기 자조금 관리규정(안) 및 자조금 관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위촉(안), 2003년도 자조금조성계획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 개최된 통합경영분과위에서는 본회 품질보증

마크 사용과 관련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시켰다. 통합분과위는 품질보증마크 하단에 작업장을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반드시 HACCP 적용작업장에서 도계된 닭고기에 한해 품질보증마크를 달도록 했다. 특히 통합경영분과위원들은 협회의 닭고기 품질보증마크는 회원사 닭고기의 안전성을 대변하는 척도라며 신규회원이 품질보증마크 사용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아울러 생산과 유통·판매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대확인했다.

한편 통합경영위는 ▲닭고기의 수습 및 가격안정과 ▲무모한 경쟁지양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닭고기 유통개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 품질보증마크



## (사)한국계육협회 닭고기 자조금 관리규정

2002. 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닭고기 자조금 조성방법과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닭고기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를 말한다.
2. "정관"이라 함은 본회 정관을 말한다.
3. "자조금사업회원"이라 함은 본회 회원으로서 자조금사업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4. "이사회", "총회"라 함은 정관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본 자조금사업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계육협회 닭고기 자조금사업(이하 "자조금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사업) 자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닭고기의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연구 사업
3.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교육사업
4. 닭고기수출촉진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닭고기 유통정보 사업

제5조 (사무소 소재지) 정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소재지와 같다.

제6조 (자조금사업 및 참가자격) 자조금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7조 (자조금사업 가입, 탈퇴)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 참가자격을 가진 자가 자조금사업에 참가코자 할 때는 "별표1"의 자조금사업 참가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자조금사업회원 가입이 확정된다. 다만, 본회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자조금사업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자조금사업회원이 탈퇴코자 할 때는 "별표2"의 탈퇴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확정된다.

제8조 (자조금사업 참가자격 상실 및 제명) ① 자조금사업 참가자격 상실 및 제명에 대한 사항은 정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제명,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자조금사업 회원에서 제외된 경우 기납부한 자조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자조금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단, 자조금 관리 운영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자조금 조성) 자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본회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적립금(거출금) 또는 협찬금
2. 농안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제10조 (자조금 조성기준 및 납부방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에 참가한 회원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정한 자조금 조성기준에 의거 자조금을 납부한다.

② 제①항의 납부방법은 본회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자조금 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자조금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조금 관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6.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2조 (회계) 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회에 자조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② 자조금사업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3조 (자조금사업 운용 계획) ① 회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자조금사업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총회 의결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회장은 자조금사업 운용계획 작성시 세입예산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접사업비와 자조금사업을 운용하는데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성 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① 회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조금사업 운용 계획이 확정되면 농안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사용한 후 집행잔액이 생겼을 때는 농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반관리 운용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5조 (자조금의 지출 제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 운용계획을 시행코자 할 때에는 가능한 자조금을 납부한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등 관리성 경비는 자조금사업 연간 총예산액 (결산액기준)의 5%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16조 (자조금사업 실적 보고 등)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① 자조금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자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편입한다. 다만, 보조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② 자조금사업 운용계획 시행중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차입금) 회장은 자조금사업의 운용관리상 차입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조금의 부담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 기구) ① 자조금사업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는 본회 직제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 관장부서에 서 담당 추진토록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조금사업 담당부서의 소요인원은 규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제15조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본회 급여규정과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지급한다.

제20조 (규정의 적용)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안법 또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닭고기 자조금 관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전화	팩스
운영위원장	김 홍 국	본회	회장	031-707-5722	031-707-5725
부위원장	한 형 석	(주)마니커	사장	031-336-0123	031-336-0120
운영위원	김 인 식	(주)체리부로식품	사장	043-533-6681	043-533-6685
	차 상 협	(주)한일농원	사장	031-235-9911	031-236-3419
	정 창 영	(주)동우	사장	063-450-2000	063-451-0101
	홍 응 수	한강CM(주)	사장	031-226-6000	031-232-5577
	나 원 주	(주)화인코리아	사장	061-331-8383	061-331-8387
	한 인 석	우인산업(주)	사장	032-547-2220	032-547-2900
	박 승 호	(주)TS해마로식품	사장	041-832-7900	041-832-7208
	안 태 환	(주)해표푸드서비스	사장	031-321-6500	031-321-6509
	이 병 동	본회	상무	031-707-5722	031-707-5725
	안 승 춘	식생활개발연구회	회장	02 -833-1623	02 -845-7925
	이 영 현	서울산업대	교수	02 -970-6454	02 -976-6460
	박 영 인	(사)미국곡물협회	한국회장	02 -720-1891	02 -720-9008
	농림부 축산경영과		02 -500-1901	02 -507-3966	